2019년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별표 5) 2019. 2. 20 현재 (단위 : ㎡)

소방시설 \ 특정소방대상물	① 공동주택	② 근린생활시설	③ 문화 및 집회	④ 종교시설	⑤ 판매시설	⑥ 운수시설	⑦ 의료시설	⑧ 교육연구시설	⑨ 노유자시설	⑩ 수련시설	⑪ 운동시설	⑫ 업무시설	⑬ 숙박시설	⑭ 위락시설	⑮ 공장	⑯ 창고시설	⑰ 위험물 및 처리 저장시설	⑱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	⑲ 동식물 관련시설	⑳ 자원순환 관련시설	㉑ 교정 및 군사시설	㉒ 방송통신시설	㉓ 발전시설	㉔ 묘지관련시설	㉕ 관광휴게시설	㉖ 장례시설	㉗ 지하가	㉘ 지하구	㉙ 문화재	㉚ 복합건축물	※ 특수가연물
소화설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화기구	▶소화기 (간이소화용구) : 연면적 33 이상 ▶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▶터널 ▶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: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모든 층 ▶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, 가스자동소화장치,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: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※ 노유자시설의 경우 : 투척용소화기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/2 이상 설치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옥내소화전설비	▶ 옥상차고, 주차장 면적 200 이상 ▶ 지하가 중 터널로 1,000 m 이상 ▶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★ 연면적 3,000 이상 (지하가 중 터널제외) 이거나 지하층 · 무창층 (축사제외)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것은 모든층 ▶ ★에 해당하지 않는 ②, ⑤, ⑥, ⑦, ⑨, ⑫, ⑬, ⑭, ⑮, ⑯, ⑱, ㉑중 국방 · 군사시설 ㉒, ㉓, ㉘, ㉚로서 연면적 1,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·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것은 모든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750 배 ↑
옥외소화전설비	▶ 목조건축물 (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것) ▶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의 합계 9,000 이상.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구조 (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은 6m이하, 2층 이상의 층은 10m이하로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된 구조) 인 경우 →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취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750 배 ↑
스프링클러설비	▶ ⑫ ~ ⑭ 동 일 아파트 등 리모델링 경우 사용검사 당시 시설 적용 (연면적, 층고, 변동이 없을시)	▶수용인원 100명 이상 모든 층 ▶무대부가 지하 · 무창층, 4층이상 300이상(그외의 층은 500이상) 모든 층 ▶영화상영관 중 지하 · 무창층은 500이상(그외의 층은 1,000이상) 모든 층	▶바닥면적 합계 5,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	▶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층 (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)	▶ 연 면 적 5,000이상 모 든 층 (기 숙 사)	▶ 바닥면적 합계600 이 상 모든층	▶바 닥 면 적 합계600이상 모든층(숙박 可) ▶기 숙 사 ⑧ 동 일	▶ ③ 동일	※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전체적용 ▶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▶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▶지하층 · 무창층,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,000이상	▶ 중 ·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 장 시 설 중 소 화 수 집 처리설비 있는 것	▶ 랙크식 창고 10 m 이 상 으로 바닥면적 1,500 이상 ▶ 물류터미널 ⑤ 동 일	▶ ⑫ ~ ⑭ 동 일 ▶ 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,000 이상의 경우 모든 층 (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아닌 경우 모든조건 1/2로 강화)	· 교도소 · 구치소 · 소년원 · 출입국 보호소 · 유치장	▶ ⑫ ~ ⑭ 동 일	▶ 연 면 적 1,000 이 상 (터널제외)	※ 스프링클러 제외	▶ ⑫~⑭ 동 일	▶ 연 면 적 5,000 이 상 모 든 층	1,000 배 이 상
간이스프링클러	▶ 합숙소 (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것) 연면적 100 이상 ▶노유자 생활시설 ▶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및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(창살설치시 300 미만, 요양병원 600 미만) ▶생활형숙박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▶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,000 이상 모든층 ▶복합건축물(별표2제30호 나목) 연면적 1,000 이상 모든층 ▶출입국보호시설 ▶다중이용업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, 산후조리원, 고시원, 실내 권총사격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물분무등설비	▶ 항공기 격납고 ▶ 기계식 주차 시설 20대 이상 ▶ 차고 · 주차장 (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) 바닥면적 200 이상 ▶ 전기실, 발전실, 변전실, 축전지실, 통신기기실, 전산실등 바닥면적 300 이상 ▶ 차고, 주차용 건축물 또는 주차시설의 경우 연면적 800 이상 ▶ 지하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(물분무소화설비설치) ▶ 소화수 처리설비가 없는 중 ·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(이산화탄소 · 할로겐화합물,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설치) ▶ 지정문화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보설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동화재탐지설비	▶연면적 1,000 이 상	▶ 연 면 적 600 이상 ▶ 목 육 장 1,000 이 상	▶ 연면적 1,000 이상 ※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(연면적 무관) 적용	▶ 요 양 병 원 ▶ 정신의료기관 바닥면적 300이상 (창살설치시 300미만)	▶ 연 면 적 2,000 이 상	▶ 수 용 인 원 100명 이상 ▶ 연 면 적 400이상	▶ 수 용 인 원 100명 이상 (숙박시설有) ▶ 연 면 적 2,000 이상	▶ 연면적 1,000 이 상	▶ 연면적 600 이상	▶ 연면적 1,000 이상	▶ 연면적 2,000 이상 (국방, 군사시설 제외)	▶ 연면적 1,000 이상 (국방, 군사시설 해당)	▶연면적 2,000 이 상	▶연면적 1,000 이 상	▶연면적 600 이 상	▶ 연 면 적 1,000이상 ▶ 1,000m 이상의 터널	▶ 통합감시시설 전 체 적 용	·	▶ 연면적 600 이 상	500 배 이 상
비상경보	▶ 지하층 ·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(공연장인 경우 100 이상) ▶ 연면적 400 이상 (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없는 축사 제외) 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▶ 50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상방송설비	▶ 연면적 3,500 이상 ▶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 ▶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 ※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시설,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 관련 시설, 지하가 중 터널, 축사 및 지하구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누전경보기	▶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※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,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동화재속보	▶ 판매시설중 전통시장 ▶요양병원 ▶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▶ 노유자 생활시설 ▶ 노유자시설(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) 및 수련시설(숙박시설 有)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▶ 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· 군사시설,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,500 이상인 층이 있는것 ▶ 목조건축물 (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것) ▶ 층수가 30 층 이상인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독경보형감지기	▶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▶ 연면적 600 미만 숙박시설 ▶ 연면적 1,000 미만 아파트 ▶ 연면적 1,000 미만 기숙사 ▶ 교육연구시설,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연면적 2,000 미만 ▶ 수용인원 100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로 숙박시설 있는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각경보기	▶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위락시설, 창고시설중 물류터미널 ▶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▶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▶ 지하가 중 지하상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스누설경보기	▶ 판매시설, 운수시설, 노유자 시설, 숙박시설,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▶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장례시설 ⊙ 전자식 수압 개폐시스템 www.pumpeye.co.kr ⊙ ☎ 代 (02) 5749-11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피난설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피난기구	▶ 피난층, 지상 1 층, 지상 2 층 및 11 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층 ▶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 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 층 ※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제외 ※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제외 ⊙ 액화가스 레벨 측정기 www.gofire.co.kr ⊙ ☎ 代 (02) 5788-11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명구조기구	▶ 5 층 (지하층 포함) 이상인 병원 (인공소생기 제외) ▶ 7 층 (지하층 포함) 이상인 관광호텔 ▶ 수용인원 100 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· 대규모 점포 · 지하역사 · 지하상가 · 이산화탄소 소화설비(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외)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→ 공기호흡기 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피난유도등	▶ 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, 유도표지 : 모든 소방대상물 (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,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축사 제외) ▶ 객석유도등 : 유흥주점 영업 (카바레 · 나이트클럽 등)과 문화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 ▶ 피난 유도선 :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(폭 120cm 이상, 열리는 방향은 150cm 이상)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상조명등	▶ 지하층,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당해층 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▶ 5 층 (지하층 포함) 이상으로서 연면적 3,000 이상 ※창고및 하역장, 가스시설은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휴대용비상조명등	▶ 숙박시설 ▶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, 대규모 점포, 지하역사, 지하상가 ▶ 다중이용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화용수(상수도설비)	▶ 연면적 5,000 이상 (가스시설,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제외) ▶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 톤이상 ※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미터 이내에 지름 75㎜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화활동설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연설비	▶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▶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이 100 명 이상 ▶ 지하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▶ 지하가 연면적 1,000 이상 (터널제외) ▶ 특별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(갓복도형 아파트 제외) ▶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창고시설(물류터미널만 해당)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,000이상 ▶ 운수시설중 시외버스 정류장,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,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 지하층 · 무창층의 바닥면적 1,000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결살수	▶ 지하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▶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 (대피시설)과 학교 지하층은 바닥면적 700 이상 ▶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 1,000 이상 ▶ 지상노출 가스탱크 용량 30 톤 이상 ▶ 부속 연결통로 ※지하구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결송수관	▶ 5 층 이상으로 연면적 6,000이상 ▶ 7 층 (지하층포함) 이상 ▶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으로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,000 이상 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1,000m 이상 ※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상콘센트	▶ 11 층 이상인 경우 11 층 이상의 층 ▶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으로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,000 이상인 것은 지하 모든층 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※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선통신보조	▶ 지하가 (터널제외) 연면적 1,000 이상 ▶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,000 이상인 것은 지하 모든층 ▶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1,000 이상인것은 지하 모든층 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▶ 공동구 (국토계획이용법 제2조9호) ▶ 30층 이상인 것으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소방지설비	▶ 공동구 (국토계획이용법 제2조9호) ▶ 지하구 : 폭 1.8 m 이상 높이 2 m, 길이 50 m 이상 (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) 인것 ⊙ 초고층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(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) ① 50층 이상, 높이 200m 이상 ② 11층이상 5,000명 (1일 수용인원) 이상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 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. 건축허가 동의 대상 (시설법 시행령 제12조)

가. 기계식 주차시설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
나. 학교시설로 연면적 100㎡ 이상인 건축물
다.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바닥면적 150㎡ 이상 (공연장의 경우 100㎡) 인 층이 있는 것
라. 차고, 주차장은 바닥면적이 200㎡ 이상
마.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로 연면적 200㎡ 이상
바. 정신의료기관,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연면적 300㎡ 이상인 건축물
사. 연면적 400㎡ 이상인 건축물
아. 항공기 격납고, 관망탑, 항공관제탑, 방송용 송 · 수신탑
자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지하구
차. 노인관련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질환자 관련시설, 노숙인자활시설,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,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⊙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
카. 요양병원 (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)

2. 소방감리 대상 (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)

⊙ **상주감리** (별표3)
가.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 (아파트 제외)
나. 16층 (지하층 포함)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

⊙ **일반감리** (주 1 회 이상 현장 배치)
가. 소방시설의 신설, 개설, 증설, 방호(방수)구역, 경계구역, 제연구역, 송수구역, 전용회로, 살수구역, 증설 공사 (캐비넷형 간이S/P,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호스릴 방식 제외)

⊙ **현장확인** (공사업법시행령 제 5 조)
가. 문화 및 집회, 종교, 판매, 노유자, 수련, 운동, 숙박, 창고시설, 지하상가, 다중이용업소
나. 가스계 소화설비 (호스릴설비 제외)
다. 연면적 10,000㎡이상,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아파트 제외)
라. 가연성가스를 제조 ·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이상인 시설

3. 자체점검 대상 (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, 별표1)

⊙ **작동기능점검 : 연 1 회 이상** (공공기관포함)
〈대상〉 영 제 5 조 의 특 정 소 방 대 상 물
〈시기〉 ①종합대상 :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
②작동대상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
⊙ **종합정밀점검 : 연 1 회 이상** (공공기관포함)
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특정대상물
② 아파트 : 5,000㎡이상이고 11층이상인것
③ 다중이용업(2,000㎡ 이상인 것)
단란(유흥)주점, 비디오물감상실, 복합영상물제공업, 영화관, 노래방, 산후조리원, 고시원, 안마시술소
④ 터 널 :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
⑤ 공공기관 : 옥소, 자탐이 설치된 연면적 1,000㎡ 이상

⊙ **점검결과보고서** (시행규칙 제 19 조)
가. 작 동 기 능 점 검 (30일 이내 제출) (2년간 자체 보관)
나. 종 합 정 밀 점 검 (30일 이내 제출)

4. 방염처리대상 및 성능위주설계

⊙ **방염처리대상** (시설법 시행령 제 19 조)
가.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, 숙박시설, 방송국 및 촬영소
나.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(수영장 제외)
다. 종합병원,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,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(숙박可)
라. 다중이용 특별법 제2조 1항 1호 규정의 다중이용 영업장
마. 가호부터 라호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 제외)
바.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
⊙ **성능위주 설계 대상물** (시설법 시행령 제 15조의 3)
가. 연면적 20만㎡ 이상인 특정대상물 (공동주택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제외)
나.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대상물
다.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대상물
라. 연면적 3만㎡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, 공항시설
마.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
⊙ **내진설계** (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2) (2016.1.25 시행)
〈대상〉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, 물분무등 소화설비

5.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(시설법 시행령 제 22 조)

⊙ **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**
가. 50층 이상 (지하층 제외)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
나. 30층 이상 (지하층 포함), 120m 이상 (아파트 제외)
다. 나목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0만㎡ 이상 (아파트 제외)

⊙ **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**
가. 30층 이상 (지하층 제외)이거나 120m 이상 아파트
나. 연면적 15,000㎡ 이상 (아파트 제외)
다. 나목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11층 이상인 곳 (아파트 제외)
라. 가연성가스 1,000톤 이상 저장 · 취급하는 시설

⊙ **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**
가.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곳 (호스릴방식만 설치된 곳 제외)
나.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을 저장, 취급하는 시설
다. 지하구 라. 공동주택 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 조 각 호)
마. 목조건축물 (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곳)

⊙ **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**
특급, 1급,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한 곳

⊙ **업무대행** (시설법 시행령 23조의 2)
1급 중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및 2급, 3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가능

6. 소방 · 안전시설 완비증명 (다중이용 특별법 시행령)

⊙ **다중이용업의 범위** (시행령 제 2 조)
가. 휴게음식점 · 일반음식점 · 제과점 : 바닥면적합계 100㎡(지하층: 66㎡)이상
나.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상영관, 복합영상물제공업, 비디오감상실업, 비디오물소극장업
다. 학원으로 수용인원 300명이상
※ 수용인원 100～300명 미만 : ① 기숙사구비 ② 학원이 2이상 (수용인원 300명 이상) ③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
라. 목욕장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, 목욕장업, 찜질방, 안마시술소
마.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바. 노래연습장업, 산후조리업, 고시원업, 실내권총사격장,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
사. 전 화 방 업, 화 상 대 화 방 업, 수 면 방 업, 콜 라 텍 업 (규 칙 제 2조)

⊙ **안전시설등** (시행령 별표1 및 1의 2)
가. 소화설비 : 소화기, 자동확산소화장치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(캐비닛형 포함)
나. 경보설비 : 비상벨 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, 가스누설경보기
다. 피난설비 : 피난기구, 유도등(표지), 비상조명등, 휴대용비상조명등, 피난유도선 (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을 경우)
라. 방화문, 비상구(75㎝X150㎝ 이상)
마.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(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)
바. 기타시설 : 영상음향차단장치, 누전차단기
※ 창문 (50㎝X50㎝ 이상) : 고시원